법학통론 중간고사 - 2014.4.23

- 고사시간은 75 분입니다.
- 자신이 소지한 자료(인터넷 자료 포함)에 한하여 자유로이 참조 가능합니다.
- 답안지에는 **학번만 기재**하고, 이름과 학과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문제 1] 아래 인용된 귀절을 참조하여, 다음을 논평하라:

- 법이 가지는 구속력의 궁극적 근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배점 30 점)

- 플라톤이 크리토에서 제기한 문제는 '악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판'의 문제이다. (배점 30 점)

"게다가, 너 스스로의 재판에서도 네가 원하면 추방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랬더라면 아테네의 법에 따라서 아테네를 떠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제와서 아테네의 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아테네를 떠나려는가? 변론 중에 너는 당당한 어투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고 공언했을 뿐 아니라 추방형보다는 사형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너가 한 말들을 싹 무시하고, 아테네의 법도 파괴하는 방식으로 몰래 도망가려는건가? 아테네의 법에 따라 살겠다는 너 스스로의 약속과 합의를 어기고 이렇게 도망하는 행위는 저급한 노예나 할 법한 짓 아닌가?" – 플라톤, 크리토, 52c-d

[문제 2] 다음 두 예문을 참조하여, 이른바 '떼법'과 법치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배점 60 점)

예문 1. 법무부 업무보고, "떼법 문화 청산 … 법질서 바로 세운다" (2008 년 3 월 19 일)

2 '떼법 문화' 청산

○ 법무·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08 년이 법치확립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한다.
○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
○ 각종 집회마다 참가하여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 엄정 처리한다.
○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을 관철한다.
○ 불법집단행동의 유형별 구체적 처벌기준을 정립하여 처벌의 객관성 제고한다.
○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으로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독려한다.

예문 2. 한상희, ‘떼법’은 없다. (2008 년 3 월 22 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이든 노동 3 권의 발현이든 일단 대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떼법의 오명을 뒤집어씌우며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진압과 형사처벌, 경제적·사회적 매장의 수순을 밟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시위진압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가당찮다. 우리 경찰은 폴리스라인의 설정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의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위반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제재하며, 집회·시위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일반화된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그때그때 자의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셈이다. 면책권 논의가 폭력이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경찰의 이런 후진성이 새 정부의 초입에서 야경국가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면 새 정부의 떼법론은 거의 점령군이 내리는 포고령 수준이 된다. 역사적으로 정치와 사회의 진보는 하나같이 길거리에 나선 민중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새 정부는 민중의 권력이 터잡게 되는 유일한 공간인 길거리의 정치를 소거하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와 시위라고 이름 짓는 바로 그 대중의 열정을 떼법문화로 비아냥거리며, 문명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다중의 목소리들을 불법시위로 오도하고,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미국에서조차 최고의 가치로서 보호하는 길거리 정치를 형사처벌과 사회적 매장의 대상으로 삼아 처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